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
----------	----

2026년 8월 2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8. 10., 이소라 의원 등 41명

나. 회부일자 : 2026. 8. 11.

다. 상정일자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26년 8월 2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의원정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위원회별 구성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원구성시의 최소 위원정수를 상향 조정하여 의원정수 증가에 상응하는 합리적 배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시 예산 규모 증가 및 최근 의원정수 확대를 고려할 때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해 심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원구성시 최초 위원정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함(안 제32조)
- 특별위원회 위원정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33명에서 35명으로 함(안 제37조제6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
-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6. 8. 14. ~ 2026. 8. 18.(5일간)
 - 나) 예고결과 : 없음
 -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동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오주석)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수 확대에 따라 원구성시 상임위원회 최소 위원정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33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음.

2 상임위원회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 확대(안 제32조)

- 안 제32조는 상임위원회의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를 현행 9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32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는 9명 이상으로 한다.		제3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	

			----- 10명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법」 제71조는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 제32조 이하는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별 소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3명 이내로 하되,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를 9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서 최소 위원정수를 10명 이상으로 상향하여 위원회 간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고자 함.

- 이는 최근 지방의회 대표성과 비례성 제고를 위해 일부개정된 「공직선거법」(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시행)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수가 확대(112명에서 118명)된 것을 반영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의원정수가 확대되었음에도 위원회별 최소 위원정수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될 경우 특정 상임위원회에 위원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반대로 일부 위원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등 위원회 간 구성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지난 11대의회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는 4년 임기 동안 최소인원인 9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13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와 최대 4명의 위원정수 차이가 발생한 채 운영되었음.
- 따라서 개정안이 최소 위원정수를 10명으로 상향하려는 것은 증가한 의원정수를 각 상임위원회에 균형 있게 배분하여 위원회 간 규모 편차를 완화하고, 다양한 의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됨.
 -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026년 7월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해 전체 11개 상임위원회가 10명 이상 13명 이하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음.

1) 지난 2026년 4월 일부개정 및 시행된 「공직선거법」은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총 정수 112명(지역구 101명, 비례 11명)에서 118명(지역구 103명, 비례 15명)으로 6명이 증가하였음.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26.8. 현재)>

구분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	도시계획교통	교 통	교 육
현원	13	10	13	13	10	10	12	13	10	13	13

*운영위원회는 중복상임위로 현원 118명 중 10개 상임위원회에 의장을 제외한 117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 확대(안 제37조제6항)

- 안 제37조제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33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37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특별위원회) ① ~ ⑤ (생략)	제37조(특별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u>33명</u> 이내로 한다.	⑥ ----- -. ----- <u>35명</u> -----.
⑦ ~ ⑩ (생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현행 조례에 따른 위원정수는 33명임.
- 이는 1998년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 당시 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것임.²⁾³⁾

2) 참고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이전이자 1991년 제 3대 의회 개원 이후인 1991년 제정·시행되었던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상 예산결산특

<(참고)서울특별시의회 대수별 의원정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의회 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근거
제5대의회 1998년 7월 9일 개원	33 (의원정수 104명)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3508호, 1998. 6. 30., 제정)
제6대의회 2002년 7월 9일 개원	33 (의원정수 102명)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437호, 2013. 1. 10., 제정]
제7대의회 2006년 7월 12일 개원	33 (의원정수 106명)	
제8대의회 2010년 7월 13일 개원	33 (의원정수 114명)	
제9대의회 2014년 7월 16일 개원	33 (의원정수 106명)	
제10대의회 2018년 7월 11일 개원	33 (의원정수 110명)	
제11대의회 2022년 7월 4일 개원	33 (의원정수 112명)	
제12대의회 2026년 7월 7일 개원	33 (의원정수 118명)	

- 33명의 위원정수가 도입된 제5대 의회 당시(1998년) 의원정수는 104명이었고, 서울특별시 예산은 약 9조 8천억 원 규모⁴⁾,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은 2조 7천억 원 규모였음.⁵⁾

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2명이었으며 당시 서울특별시의회 전체 의원정수는 132명이었음. 이후 한차례 개정을 통해 위원정수가 27명으로 확대되었음(서울특별시조례 제2838호, 1991. 11. 5., 일부개정).

3) 이후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로 조례명 개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2013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서울특별시조례 제5437호, 2013. 1. 10., 제정])으로 폐지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33명으로 유지하였음.

4) 199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확정 고시(고시1997-403) 기준.

5) 서울특별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

- 그러나 제12대 의회 의원정수가 118명으로 확대되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은 본예산 기준 51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되어⁶⁾ 1998년 이후 약 5.3배,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도 본예산 기준 10조 9천억 원⁷⁾으로 약 4배 확대 되었음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것임.
- 이에 개정안은 변화된 의회 규모와 서울특별시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위원정수를 35명으로 상향시켜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예산 및 결산 심사의 충실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2명의 증원 규모는 「지방자치법」상 위원정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의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이해되나, 위원회 규모 확대에 따른 운영비 증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의견 조율 부담 또는 속도의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과 관련해 협의권이 있는 각 교섭 단체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35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음.⁸⁾

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6면 및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4면 참조.

- 6) 참고로,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규모는 매년 50조 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음(본예산 기준 '22년 44조 2천억 원, '23년 47조 2천억 원, '24년 45조 7천억 원, '25년 48조 1천억 원, '26년 51조 5천억 원).
- 7)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출예산규모는 매년 10조원 내외에서 편성·운영되고 있음(본예산 기준 '22년 10조 6천억 원, '23년 12조 9천억 원, '24년 11조 2천억 원, '25년 10조 8천억 원, '26년 10조 9천억 원)
- 8) 제33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교섭단체 의견조회(운영전문위원실-1255, 2026.8.13.) 결과 이견 없음.

-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 및 상임위원회 위원 수 비율에 따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정수 확대에 따른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러한 비례 원칙이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겠음.

4 종합검토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수 확대를 반영해 상임위원회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원구성시 상임위원회의 최소 위원정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하는 것은 증가한 의원정수를 상임위원회에 보다 균형 있게 배분하여 위원회 간 구성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35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의원정수 확대와 서울시 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안 및 결산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5명으로 확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의 운영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선임 방법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정수 확대에 따른 운영비 확보와 회의실·간담회장 등의 시설개선 등이 선행될 필요도 있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소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8월 10일

발 의 자: 이소라,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김미주, 김병진,
김정우,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연수, 목소영,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승진, 선정환, 송순효,
송윤정, 양평호, 오금란,
유주동, 윤수혁, 이병도,
이상훈,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재식,
이정미, 장상기, 장세훈,
정진철, 주무열, 최정은,
한 신, 함대건,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의원(41명)

1. 제안이유

- 의원정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위원회별 구성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원구성의 최소 위원정수를 상향 조정하여 의원정수 증가에 상응하는 합리적 배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시 예산 규모 증가 및 최근 의원정수 확대를 고려할 때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해 심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함(안 제32조).
- 나. 특별위원회 위원정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33명에서 35명으로 함(안 제37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9명”을 “10명”으로 한다.

제37조제6항 단서 중 “33명”을 “3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는 <u>9명</u> 이상으로 한다.	제3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 ----- -----. ----- <u>10명</u>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37조(특별위원회) ① ~ ⑤ (생략)	제37조(특별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u>33명</u> 이내로 한다.	⑥ ----- -----. ----- <u>35명</u> ----- -.
⑦ ~ ⑩ (생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공직선거법」 개정¹⁾에 의해 **확정된 의원정수 범위내에서** 의회내 상임위원회 **최소정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대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각종 자료(법령, 예산편성 지침 등) 등 검토결과 본 개정안 자체만으로 실질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겸임이 가능하다는 특성상 위원회 총 정원 증가(33명→35명)에 의한 비용²⁾이 발생되나 이는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총액한도³⁾내 예산총액의 **내부조정 사안**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부금액이 증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안이 서울시 재정지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작성자

시 의 회 사 무 처	재정분석과
재 정 분 석 과 장	주 병 준
입법재정지원1팀장	박 현 우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 1) [관련법령 개정사항] 공직선거법 개정(2026. 4. 22. 일부개정)으로 시·도회의의 **비례대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이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되었으며, 또한 관악구 및 강동구 등 일부 지역구 정수가 증가됨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회의의 의원정수) ④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신설 1995. 4. 1., 2026. 4. 22.>

[별표 2] 시·도회의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750명/중원정수 포함 754명)

- 2) [일부경비 한하여 증가예상]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있는 일부경비에 한하여 소폭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교섭단체 대표의원 등과 관련 있는 경비이며, 의원국외 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또한 의원 1인당 배부금액으로 위원증가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3)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는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설정하며 당해연도에 전년 대비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수 증감 비율을 고려하여 자체 조정이 가능함
※ 자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